심의필R(최)-2024-215

신용거래핵심(요약)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
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신용거래	■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 증권을 담보로 매수 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 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 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 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 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수거래와 차이〉 미수거래는 매매거래일(T)에 증거금을 우선 납입하고 결제일(T+2)에 잔금을 결제합니다. 결제일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결제일 익일에 반대매매를 실시합니다. 반면, 신용거래의 경우 기본 만기일은 90 일 이며 만기일 경과 및 신용공여 상환차손, 담보유지비율미달에 따른 반대매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 위험등급에 관한 사항

①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②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거래를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④ [유동성위험 : 중도매매 허용] 본 상품은 중도매매가 가능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사항]

①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 미상환 시 담보 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종목별 담보유지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신용공여금액에 따라 가산 적용)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모든 증권 매매 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 수수료·제세금 납부 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① 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고객센터 (TEL : 1588-6800)•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설명서

《 목 차 》

1. 신용거래제도 개요 ----------- 4

2. 신용거래의 위험성 ----------- 18

3. 기타 주요사항 -------------- 20

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융자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신용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신용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용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1.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거래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융자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①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고객의 선호하는 투자성향별로 신용융자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해 놓은 신용공여유형별 보증금률, 융자비율, 융자한도, 추가담보제공기한, 담보유지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신용공여유형의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거래 개시

①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유 형	신용융자	신용대주
현금필요형	현금 45%(대용 35% 가능)	100% (대용 100% 가능)
적극투자형	현금 45%(대용 45% 가능)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현금(CMA 계좌의 RP 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 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만 하지만, 대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는 대용으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예정금액은 현금으로 인정하여 결제예정금액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②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이 산출되며**,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단, 신용대주의 경우 계좌 담보비율 적용)
※ 신용공여금액 30억원 초과 시 10%p 가산, 50억원 초과 시 20%p 가산 적용됩니다.
※ 신용대주의 경우 신용대주계좌 최소담보유지비율 120%를 적용합니다.

■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단, 신용대주의 경우 계좌 담보비율 적용)

구분	A군	B군	C군	D군	E군	F군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140%	140%	140%	140%	140%	140%

※ 단, F군 중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 종목인 경우는 160% 적용됩니다.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Stock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7] 신용가능종목조회
※ A~E군 종목별 기본 한도 초과 이용 시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됩니다.

※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종목별 융자금 C군 ‘가’ 종목 5억원, E군 ‘나’ 종목 1억원,

F군 '다' 종목 1억원 보유 가정 시

융자받은 종목군	융자금	종목별 기본한도	종목별 담보비율	종목 필요담보금액	비 고
C군 '가' 종목	5 억원	10 억원	140%	7 억원	
E군 '나' 종목	1 억원	1 억원	140%	1.4 억원	
F군 '다' 종목	1 억원	없음	160%	1.6 억원	관리종목 지정
합 계	7억원			10 억원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종목별 담보비율

●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 종목필요담보금액 / 융자금

☞ 10 억원 / 7 억원 = 142.86%

☞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 142%

(적용 기준은 16시경 기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및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일 적용된 이후 융자받은 종목이 변경되면 익일 16시경에 계좌적용담보유지비율이 재계산되어 일별로 적용됩니다.)

● 담보부족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적용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D+2 일 가정산 평가금액)와 CMA 평가금액을 감안하여 계산하며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화내용 녹취 방법은 자동음성안내 통화, 유선통화 등으로 합니다.

▪ 회사가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추가담보에 대한 징구의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CMA 계좌의 RP 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 는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에서 자동 매입하는 RP 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신용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단, 담보증권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조치, 불공정거래의 우려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전에 홈페이지에 안내한 종목 등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객 담보증권 중 E, F 종목군의 담보평가금액의 합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담보유지비율을 알림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고객 통지 후 적용합니다.

③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1 일 이내)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수량 산정을 산정합니다.(A,B,C 군 15%, D,E,F 군 20% 하락 기준)

④ 신용융자/신용대주이자 및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신용융자/신용대주이자를 회사가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융자금/대주수량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며, 융자이자의 연체 시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단,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연체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용융자: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서비스등급 및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의 이용기간별 신용융자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연 9.9% 이내로 적용됩니다.

㉡ **신용대주: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종목별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연 9.9% 이내로 적용됩니다.**

㉢ 우대 고정이자율 적용 계좌는 우대 고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3.0%)를 합산한 이자율과 최대연체이자율(연9.9%)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 우대 할인이자율 적용 계좌는 최대연체이자율(연9.9%)에서 차주에게 적용 중인 우대 할인이자율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윤년의 경우는 해당일수 반영하여 적용됩니다.
※ 미상환융자금 및 이자미납금액 변제 시점에 차주의 적용 연체이자율로 미변제 연체금액 전액에 대해 소급하여 연체이자금액을 산정합니다.

▪ 융자금 상환 시 이자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융자금 + 이자
- 만기미상환융자금 + 연체이자

※ 매도상환으로 인한 제비용 발생 시 제비용(매매수수료, 세금 등)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합니다.

- 이자율은 기준금리,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가격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기준금리는 CD 수익률(3 개월일평균)을 사용합니다. (※CD 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 : CD 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고객의 기여도,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우대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이자율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적용되며, 적용기간 종료 후 융자실행 및 만기연장 시 기본이자율로 환원됩니다.

〈 신용융자 이자율: 소급법 적용 〉

구분	1~7 일	8~15 일	16~30 일	31~60 일	61~90 일	91 일~
영업점 계좌	연4.9% (기준금리 3.75%+ 가산금리 1.15%)	연7.8% (기준금리 3.75%+ 가산금리 4.05%)	연8.2% (기준금리 3.75%+ 가산금리 4.45%)	연8.6% (기준금리 3.75%+ 가산금리 4.85%)	연9.2% (기준금리 3.75%+ 가산금리 5.45%)	연9.5% (기준금리 3.75%+ 가산금리 5.75%)

구분	1~7 일	8~15 일	15 일초과
영업점 外 계좌	연5.5% (기준금리3.75%+ 가산금리1.75%)	연8.5% (기준금리3.75%+ 가산금리4.75%)	연9.5% (기준금리3.75%+ 가산금리5.75%)

* 영업점 外 계좌는 다이렉트 계좌임(은행, 비대면)

〈신용대주이자율: 종목별 차등금리 적용〉
※ 신용대주이자율 확인 화면: 카이로스[0941] 대주가능종목조회
m.Stock 대주매도주문화면

⑤ 회사는 신용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75%)를 지급합니다.

⑥ 사전에 계좌번호별로 설정한 신용거래한도에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용거래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자
- 회사에서 정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 거래 영업점의 신용거래잔고 한도 초과
- 회사 자금사정 및 정책변경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 실시간 담보관리에 애로가 있는 고객(휴대폰 미등록자)
▪ 사고발생 고객(피싱 발생계좌)
▪ 기타부실거래자

⑦ 연속담보부족횟수가 1 일 이상인 계좌는 100% 현금 주문만 가능합니다.

⑧ 신용융자 신규 주문 및 만기 연장 시 종목별 한도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합산 관리)

구분	A군	B군	C군	D군	E군
종목군 주문/만기연장 한도	20억	20억	10억	3억	1억

※ 융자 종목군 확인 화면: m.Stock 주식현재가, 카이로스[0917] 신용가능종목조회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현금필요형</th><th>적극투자형</th></tr>
<tr><td colspan="2">담보유지비율</td><td colspan="2">융자받은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하며, 융자 금액 가중합산하여 계좌의 적용담보유지비율 산출
(신용공여금액에 따라 가산 적용됨)</td></tr>
<tr><td colspan="2">신용융자비율</td><td>매수대금의 90%</td><td>매수대금의 100%</td></tr>
<tr><td colspan="2">신용융자
이자율</td><td colspan="2">*기간별 차등적용(연 4.9% ~ 9.5%, 2024. 04. 08 기준)
신규 신용융자주문시점의 실제 신용융자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2" rowspan="2">신용융자
보증금률</td><td>현금 45%
(대용 35% 가능)</td><td>현금 45%
(대용 45% 가능)</td></tr>
<tr><td colspan="2">대주거래 : 현금 100%(대용 100% 가능)</td></tr>
<tr><td colspan="2">신용융자
이자적용방식</td><td colspan="2">소급법</td></tr>
<tr><td colspan="2">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td><td colspan="2">연 0.75%</td></tr>
<tr><td colspan="2">추가담보
제공기간
(D 일 오후 4 시
기산)</td><td>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td><td>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td></tr>
<tr><td colspan="2" rowspan="2">임의상환 정리
(반대 매매일)</td><td>D+2 일</td><td>D+2 일</td></tr>
<tr><td colspan="2">※ ‘D’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함</td></tr>
<tr><td rowspan="2">약정한도</td><td>신용
융자</td><td>개인 20 억</td><td>개인 20 억</td></tr>
<tr><td>대주</td><td colspan="2">1. 일반투자자
– 초기투자 시 최대 3 천만원
– 2 년 내 5 회 이상 & 5 천만원 투자경험 있을 경우 최대 7 천만원</td></tr>
</table>

		- 투자경험 요건 & 최초 투자 이후 2 년 경과 시 최대 1 억원 2. 전문투자자: 최대 1 억원 (투자경험에 따른 한도차등 없음) ※ 투자경험횟수는 매도거래 후 매수상환으로 완결된 거래를 1회로 간주합니다. ※ 투자경험금액은 상환수량 * 대주매도단가로 산정합니다.
상환기간	신용융자	90 일
		신용융자의 경우 조건**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 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신용융자 만기 연장 가능일 : 만기일 30 일 전부터 가능 ※ 신용융자 만기 연장 가능 시간 : 영업일 07 시 ~ 23 시
	대주	90 일
		신용대주의 경우 조건***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 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 대주만기 연장 가능일 : 만기일-4 영업일 ~ 만기일-2 영업일만 가능 ※ 대주만기 연장 가능 시간 : 영업일 08 시 20 분 ~ 17 시 20 분
신용공여이자 징수일		익월 첫 번째 영업일, 매도/매수상환시, 현금/현물상환시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지급일		분기시작 월 둘째주 마지막 영업일(1,4,7,10 월)

*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신용만기연장 요건: 고객의 별도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융자 가능 종목(단, 투자주의 종목 中 당사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 포함),

*** 신용대주만기연장 요건 :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최소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대주 가능 종목(단, 투자주의 종목 中 당사 증거금 100%가 아닌 종목 포함) 및 대주 가능 수량이 있는 경우 가능

※ 신용융자 이자적용방식의 종류(당사 소급법 적용)

체차법: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소급법: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단일법: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이자율 적용방식에 따른 이자금액 계산(예시),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 융자금액 1 억원, 4.18 ~ 6.17 (융자기간 60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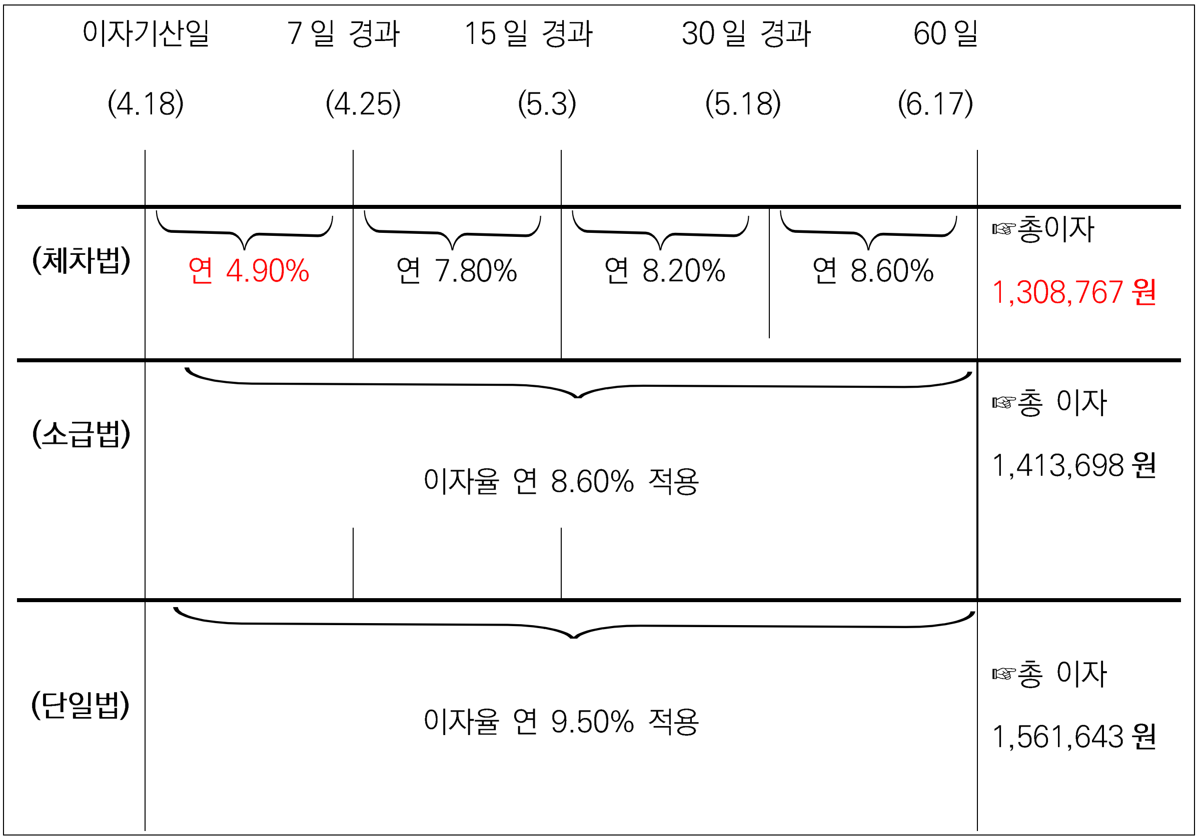

※ 체차법 (융자이자율 ~7 일:연 4.90%, ~15 일:연 7.80%, ~30 일:연 8.20%, ~60 일:연 8.60%,

~90 일:연 9.20%, 90 일 초과:연 9.50% 가정)

소급법 (융자이자율 ~7 일:연 4.90%, ~15 일:연 7.80%, ~30 일:연 8.20%, ~60 일:연 8.60%,

~90 일:연 9.20%, 90 일 초과:연 9.50% 가정)

단일법 (융자이자율 연 9.50% 가정)

※ 신용대주 이자적용방식(종목별 단일법 적용)

*계산식: 신용대주매도금액(=대주매각대금) x 종목별 이자율 x 신용대주일수 / 365 일

※ 당일매도/당일매수 시 1 일 이자 발생, 한편넣기 (융자일 불산입/상환일 산입), 원미만 절사

※ 윤년일 경우 해당일 수 반영

(예 시) 신용대주이자율 4% 인 종목을 신용대주매도금액(=대주매각대금) 500 만원,

대주기간 50 일 (9 월 5 일~10 월 25 일까지) 사용 시

1.정기 이자: 10 월 1 일 (첫 영업일)

융자기간: 9 월 5 일(융자일 불산입)부터 9 월 30 일까지 25 일

이자금액: 500 만원 x 4% x25 일 / 365 = 13,698 원

2.상환이자: 10 월 25 일

융자기간: 10 월 1 일부터 10 월 25 일(상환일 산입)까지 25 일

이자금액: 500 만원 x 4% x25 일 / 365 = 13,698 원

3.총 이자금액: 정기이자 + 상환이자 = 27,396 원
윤년일 경우 해당일 수 반영

※ 추가담보제공기간 및 반대매매일에 대한 비교 사례

구 분	미달 기준	D 일	D+1 일	D+2 일
현금필요형 및 적극투자형	**140% 미만 (단, 대주계좌 120%미만)**	장 마감, **추가담보 제공 요구일**	추가담보 제공기간	**임의상환 (반대매매)**

*** 'D'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을 의미함**

※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나)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ELS)에 한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민간시가평가금액

라)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

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주식: 기준가격

바)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기준가격

사) 가)~바) 사항에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평가

※ 다만, 매도증권담보융자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함)을 담보평가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담보평가의 특례

가)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봅니다.

① 무상증자시 신주 : 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②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 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③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 : 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④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⑤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나) '가)'에 따른 권리의 평가(권리수량*적용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권리락일 ~ 기준일	~ 청약일	~ 환불일	~ 입고일
무상증자시	권리수량	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	배정수량		
	적용단가	당일종가(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유상증자시	권리수량	소유수량* 주당배정비율	배정작업수량	청약수량 (원청약수량+ 초과청약수량	최종배정수량 (원청약수량 배정분+ 초과청약수량배정분)
	적용단가	(당일종가 – 발행가액) 단, 당일종가 없으면 기준가		원배정수량: 당일 종가 초과청약수량: 발행가액	당일 종가
공모주/ 전환사채 청약시	권리수량			청약수량	배정수량
	적용단가			공모가(발행가)	
실권주 청약시	권리수량			청약수량	배정수량
	적용단가			청약단가	당일종가

*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의 권리평가는 합병 및 회사분할 사유 혹은 합병 및 회사분할 후의 상장여부 등을 회사가 검토하여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추가담보로 납부가능한 상장주권은 대용증권, 투자유의/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종목으로 한정합니다.

3) 신용융자대상종목

가) 신용융자

① 신용융자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②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신용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그 외에 신용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5 영업일간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당사가 증거금 100% 징수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 정리매매종목
- **회사가 신용융자 제한종목으로 지정하였을 때**

나) 신용대주

- 회사가 지정한 종목

4) 주문 및 상환

가) 신용융자

(1) 신용융자매수주문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주문 가능

(2) 상환: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가) 매도상환: 신용융자 매수했던 종목을 매도함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매도상환 주문 가능

(나) 현금상환: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현금상환신청 가능

※ 현금 상환 후 종목별 고객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현금 상환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상환은 영업일 00:30~23:30 까지 가능하며, 현금상환취소는 상환당일에 한해 취소 후 해당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충족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권리가 발생한 유통융자 종목은 현금상환/담보해지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용대주

(1) 신용대주매도주문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주문 가능

※ 대주매도의 경우 주문계좌(고객별 보유계좌 전체)에 동일종목의 잔고(체결기준, 현금/신용/담보융자/선물대용지정잔고)가 있을 경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2) 상환: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가) 매수상환: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매수상환신청 가능

(나) 현물상환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상으로 현물상환신청 가능

※ 대주매도시의 주문 호가가격 제한

증권시장의 '차입주식매도시 호가가격 제한' 규정으로 대주매도시에는 주문가격 제한이 있으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가가격 제한 사항

ⅰ)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다만 직전가(현재가)가 그 직전가보다 높은 경우 직전가(현재가)로 호가 가능

ⅱ)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가능

ⅲ) ETF 종목(예 : KODEX200)은 제외 (규정개정 2006.7.10 일)

※ 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는 주문할 경우, '주문가격 오류' 사유로 주문 거부

(3) 대주매도 시 고객확인사항

(가) 대주매도 시에는 '차입공매도 관련 고객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받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나) 또한 대주매도 시 아래에 내용에 대해 주문접수자에게 확인받고 이상 없을 경우만 대주매도가 가능합니다.

i) 타 중개업자(증권사) 계좌 등에 매수포지션이 있는 종목은 당사를 통해 공매도가 불가합니다.

ii) 타 중개업자 계좌 등에 공매도 포지션이 있는 종목은 당사에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iii) 당사 계좌에 공매도포지션이 있는 종목에 대해 타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상환에 대한 세부적용사항

① 회사는 신용융자 또는 신용대주의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오후 4 시 30 분까지)한 당일에 상환됩니다.

〈 선택가능한 상환방법 〉

㉠ 수량기준 상환: 상환하고자 하는 수량이 기존 융자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융자금까지만 상환하는 방법

㉡ 금액기준 상환: 현금상환의 경우는 상환하고자 '신청하는 금액', 매도상환의 경우는 '매도정산대금'전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

③ **회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및 정규장, 시간외거래시장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일(만기일) 다음영업일에 고객계좌에 현금이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채무변제가 자동으로 충당합니다. (단, 매도결제대금에 의한 자동상환은 상환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융자 또는 신용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사는 금액기준방식을 적용하여 현금상환과 매도상환을 처리합니다.

5) 주문시 편리한 통합매도 기능

① 융자일자별로 각각 여러 건의 매도상환주문을 통합하여 총 매도가능수량을 산출한 후 1 건의 매도상환주문으로 선입선출법 혹은 후입선출법에 의한 주문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융자일자별로 징수되는 증거수량, 체결수량, 매도상환융자금은 주문세부내역이나 신용잔고현황 등의 관련화면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수량기준매도상환과 금액기준매도상환(영업점을 통한 주문만 가능) 차이 비교표 〉

〈 전제조건 〉

□ 융자수량 : A 종목 1,000 주

□ A 종목 전일종가 : 14,000 원

□ 융자금 : 10,000,000 원

□ 현금(예수금) : 없음

□ 주문체결 및 거래내역

A 종목 400 주 14,000 원 매도, 매도대금 5,600,000 원

□ 거래비용 가정 : 위탁수수료율 0.3%,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0.3%

□ 융자이자 : 없다고 가정함

항목	수량기준 매도상환	금액기준 매도상환	비고
매도상환 융자금	4,000,000 원 = (400 주 / 1,000 주)×10,000,000 원	5,566,400 원 = min(매도정산대금(5,566,400 원), 체결전 융자금(10,000,000 원))	
상환차익	1,600,000 원 = 매도대금(5,600,000) − 매도상환융자금(4,000,000 원)	33,600 원 = 매도대금(5,600,000 원) − 매도상환융자금(5,566,400 원)	
예수금	1,566,400 원 = 상환차익(1,600,000 원) − 거래비용(33,600 원) =〉(5,600,000 원 × 0.006 = 33,600 원)	0 원 = 상환차익(33,600 원) − 거래비용(33,600 원) =〉(5,600,000 원 × 0.006 = 33,600 원)	
담보비율	166.10% = [융자주식평가금액(8,400,000 원) + 1,566,400 원]/융자금(6,000,000 원) =〉 (10,000,000 원 − 4,000,000 원)	189.46% = [융자주식평가금액(8,400,000 원) / 융자금(4,433,600 원) =〉 (10,000,000 원 − 5,566,400 원)	23.36 % 증가

〈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주문과 통합매도상환주문 비교 〉

〈 전제조건 〉

□ **융자수량** : A 종목 12/20 1,000 주, 12/19 2,000 주, 12/18 1,500 주 =〉 총 4,500 주

□ **A 종목 전일종가** : 14,000 원

□ **융자금** : A 종목 12/20 10,000,000 원, 12/19 24,000,000 원, 12/18 12,000,000 원

=〉 총 46,000,000 원

□ **계좌평가금액** : 63,000,000 원

□ **담보비율** : 63,000,000 원 / 46,000,000 원 =〉 136.95%

□ **매도주문을 입력하려고 하는 수량** : 4,000 주

항목	융자일자별 매도상환	통합매도상환	비고
매도가능수량조회	A 종목 12/20 1,000 주 A 종목 12/19 2,000 주 A 종목 12/18 1,500 주	A 종목 4,500 주	1 건으로 조회됨
주문건수	**3 건의 주문전송** A 종목 12/20 1,000 주 -----① A 종목 12/19 2,000 주 -----② A 종목 12/18 1,000 주 -----③	**1 건의 주문전송** A 종목 4,000 주 -----① 내부적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의 주문내역 관리	
정정/취소 주문시	**3 건의 주문전송** A 종목 12/20 1,000 주 -----④ A 종목 12/19 2,000 주 -----⑤ A 종목 12/18 1,000 주 -----⑥	**1 건의 주문전송** A 종목 4,000 주 -----② 내부적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의 주문내역 관리	
체결시	**3 건 체결접수** A 종목 12/20 1,000 주 -----④ A 종목 12/19 2,000 주 -----⑤ A 종목 12/18 1,000 주 -----⑥	**1 건 체결접수 후 내부관리** 내부적으로는 후입선출법으로 융자일자별 매도상환체결내역 관리	융자일자별 매도상환금액의 조회가능

2.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융자 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45%, 융자비율 100%인 경우 450 만원을 가지고 1,000 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145%입니다.(1,450÷1,000×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2 일 연속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450 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 신용대주 시 투자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 180 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 429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08 조의 4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6-34 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일 때 현금 1,000 만원을 담보로 1,000 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 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신용대주 권리관련 위험 안내)

가. 주가와 권리락일

해당 종목의 권리락일전에 신용대주 매도한 고객의 경우 권리락일 이후 매수상환 시 혹은 그 기간 사이에 권리락에 따른 권리대용금 등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락일 전후 매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금배당

대주 거래 고객은 대주 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 배당 발생 시 당해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 주식배당

대주거래 고객은 주식배당(1 주 미만 포함) 발생 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배당신주 최초 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대주수량 * 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라. 유상/무상 증자

대주거래 고객은 신주인수권(1 주 미만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기준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 대주수량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융자금 또는 신용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주요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융융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 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 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 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안내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계약서류수령일 또는 계약서 체결일(계약서류제공 받지 아니한 경우)부터 14 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금융소비자호보법 시행령 제 36 조에 따라 고객이 청약 철회 서면을 우편, 팩스로 발송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 제외)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대출 약정 시 징구한 인지세와 대출이자는 청약 철회 시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5) 반대매매 등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에 기재된 연체된 이자율을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

1)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융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융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 3 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유통융자 매수 이후 주권교체권리(합병, 분할 등)가 발생할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경과 시 자기융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5) 17시 이후 유통융자 현금상환은 금액현금상환 중 현금수량전환 미처리 방식만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신용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 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 억원 이상인 경우

2)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유의사항

유상증자 공시일 다음날부터 최종 발행가 확정일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권익보호 사항

1. [위법계약해지]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 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료열람요구]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 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제공(첫날 산입)
3.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1.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판매직원 안내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미래에셋증권 _______________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 **판매직원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참고> CD수익률 설명서

가.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월)**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나.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1)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2)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1)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2)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3) **Level 3 (전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2)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라.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거래 (2)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3)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4)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5)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6)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2)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바.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이 선정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CP(A1, 91일) 금리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2)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5)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6)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CD 산정 기간 중(3개월 일평균 사용),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날짜는 대체 금리인 CP수익률을 사용합니다

EX) 특정 날짜에(24.02.22) CD금리 산출 오류 발생 경우, 해당 날짜에(24.02.22) 수익률을 CP금리로 사용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홈페이지 공시 등).